

강원도립대학교 입시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8-03-31 규정 제007호
(개정) 2000-10-19 규정 제080호
(개정) 2010-05-03 규정 제231호
(개정) 2012-10-15 규정 제281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16-05-13 규정 제404호
(개정) 2022-04-25 규정 제598호
(개정) 2022-06-14 규정 제6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입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입시전형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입시 전형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학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처장, 종합정보관장, 학생생활관장과 각 학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2016.4.25., 2016.5.13., 2022.4.25., 2022.6.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시전형 방법과 시기
2. 전형비율(우선, 일반, 특별)
3.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
4. 면접 및 신체검사 방법
5. 동점자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6. 추가 합격에 관한 사항
7.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입시전형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조직) 삭제 <2010.5.3.>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입학홍보팀장이 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0.5.3.>

제8조(분과위원장 등) 삭제 <2010.5.3.>

부칙(1998. 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입시전형 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인정하되, 이 규정 시행 후 새로이 구성하는 입시전형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10.19.)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3.)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13.)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4호, 2022. 6.14.)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